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감 규정

번호: A-640
제목: 학교 시설에서 촬영
항목: 학생
발행: 2009 년 6 월 15 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1998 년 10 월 26 일 자 규정 A-640 를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이 규정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뉴욕시 교육청 구성과 정책을 반영합니다.
- 여기 설명된 절차가 영상 및 사진 촬영 프로젝트 모두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모든 요청은 우선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뉴욕시 교육청의 일반적인 장소 계약 및 동의 양식이 반드시 영상 및 사진 촬영 프로젝트 전 시행되도록 조언합니다.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감 규정

번호: A-640
제목: 학교 시설에서 촬영
항목: 학생
발행: 2009 년 6 월 15 일

요약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듀서의 학교, 학교 놀이터 또는 기타 뉴욕시 교육청("교육청") 시설에서의 영상, 사진 또는 기타 이미지나 목소리 촬영을 위한 모든 요청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Office of Communications and Media Relations)로 접수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 촬영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I. 언론 이외의 학교 시설 내 영상 또는 사진 촬영 고려 절차

A. 학교 또는 기타 학교 시설에서의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위한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뉴스의 프로듀서 또는 제작자(이하 "프로듀서"라고 칭함)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에 우선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B. 프로듀서는 촬영 스토리의 서면 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리가 주로 교육청, 학생 또는 직원을 다룬다면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에서는 최종 촬영 대본을 검토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촬영 허가는 교육청의 단독 재량입니다.

C.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은 학교 시설 내 영상 또는 사진 촬영 요청을 검토할 때 학교장, 법무 담당실 및 기타 적절한 관계자와 상의합니다.

D. 학생들의 학습은 학교 시설 내 영상 또는 사진 촬영으로 인해 방해 받아서는 안됩니다. 수업과 시험 기간의 요일 또는 시간에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이 방해 받거나 저해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 촬영을 멈추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 학교 시간 중 학교 시설에서의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은 학교장의 서면 허가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F. 한 촬영에 하나 이상의 교육청 시설이 필요하다면 각 시설에 대한 개별 검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촬영 크루는 한 교육청 장소에서의 촬영에 대한 허가를 다른 교육청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G. 교육청 시설이 공유된 장소일 때에는(한 건물에 2 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 촬영에 포함되는 학생 또는 교사가 있는 각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한 학교에서의 촬영에 대한 허가는 함께 위치한 다른 학교에서의 촬영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프로듀서는 촬영 시간, 날짜, 장소에 대해 시설 내 모든 학교장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H. 제작 인원 모집과 장소 선정의 책임은 프로듀서의 독점적인 의무입니다.

I. 학교장과 해당 교육청 직원 또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청 직원 또는 학생의 영상이나 사진은 촬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동의 양식은 반드시 법무 담당실에서 촬영 전 승인해야 합니다. 모든 영상 및 사진 촬영의 사용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홍보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시간 전 또는 이후, 학교 후원이 아닌 행사,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프로덕션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듀서가 고용한 학생의 경우 보수와 허락에 대한 조치는 프로듀서와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J.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프로젝트는 학교와 학생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에 돈 또는 장비 기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인턴십이나 지속적인 멘토링 프로젝트 제공,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영화제작에 대한 강연, 유명 배우의 학교 방문 등. 또한 교육청,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가 상업적 라이센스 사용 또는 배포되는 경우 교육청에 이익이 되도록 로열티를 협상할 권리를 가집니다.

K.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에서 승인을 하면 프로듀서는 반드시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허가증을 받고 일반 영화 사용 비용을 바탕으로 프로덕션 목적에 따라 차등적인 임의의 개방 비용을 포함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 면제는 비영리 및 학교 학생 프로젝트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진 및 제작 크루의 대기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프로듀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기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은 반드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각 허가는 승인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L. 프로듀서는 반드시 뉴욕시 교육청을 최소 1 백만 달러의 상업 일반 책임 보험의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경우 법무 담당실에서 추천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M. 프로듀서와 교육청 담당자는 반드시 촬영 전 교육청의 일반 장소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장소 사용 동의서는 법무 담당실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N. 프로듀서와 교육청이 촬영 전 서명한 장소 사용 동의서에 명확한 허가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또는 사진 촬영에 학교를 특정하거나 학교의 이름 또는 뉴욕시 교육청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업습니다.

O. 프로듀서는 교육청 시설 내에서 교육청, 뉴욕시 및 기타 해당되는 모든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프로듀서의 비용 부담으로 프로듀서의 자체 보안 직원과 함께 학교장은 뉴욕시 학교 안전 요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학교 내 광고 촬영은 광고가 공공 서비스 안내 또는 교사 구인 캠페인 등의 교육청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정치적 또는 프로모션 성격의 선전을 위한 모든 촬영을 의미하며 영리 및 비영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Q.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적 또는 예술적 목적의 연수 비디오 등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된 교육청 학생 및 직원의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은 해당 교육청 직원 또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과 학교장 모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학생 및 직원은 광고 후원의 목적으로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II. 언론의 학교 시설 내 영상 또는 사진 촬영 고려 절차

A. 모든 뉴스 기관, 프로듀서 및 기자의 일반적 뉴스 취재 목적(영상, 사진 촬영 또는 인터뷰) 요청은 반드시 먼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뉴스 기관, 프로듀서 및 기자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학생이 촬영되는 경우 뉴스 기관, 프로듀서 및 기자는 반드시 학생의 동의 양식(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홍보실 웹사이트에서 제공)에 학부모/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B. 잡지 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반드시 섹션 I 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II.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Media Relation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5141

팩스: 212-374-5584